

창원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240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1. A 주식회사

2. B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9.

주 문

-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2021. 7. 2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1. 8. 6. 접수 제350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 B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주문과 같다.

2. 예비적 청구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원고에게 19,465,7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판단

가. 원고는 2020. 10. 20.자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C에게 구상금 채권을 가진다. 그런데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2021. 8.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에게 같은 날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해주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 및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B은 사해행위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C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주위적 청구를 인정하므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규도

별지